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금연이슈리포트



WHO, 불법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전 세계 담배거래의 10%.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

Intogr	aphic

Monthly Updates 담배제품 불법거래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Monthly Highlights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의 필요성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국내외 노력 담배제품 불법거래 규제와 의정서의 발효가 시급한 이유

Monthly Index

성인의 담배연기 노출 현황



April 2015

TOBACCO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CONTENTS

Infographic

담배제품 불법거래

Monthly Updates

- 04 이 달의 정책
- 06 이 달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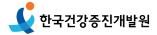
Monthly Highlights

- 09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의 필요성
- 10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국내외 노력
- 13 담배제품 불법거래 규제와 의정서의 발효가 시급한 이유

Monthly Index

14 성인의 간접흡연 노출 현황

발행인 장석일 **기획총괄** 오유미 **편집 · 구성** 이정은, 장영림





INFOGRAPHIC No.23

담배제품 불법거래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서명 및 비준 현황

★비준국 아프리카 유럽 그리스 차나 가봉 ★ 네덜란드 노르웨이 🚹 기니비사우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마다가스카르 독일 말리 === 리투아니아 매케도니아 베냉 보츠와나 💘 몬테네그로 루르키나파소 벨기에 수단 스웨덴 🍇 스페인 ★ 코트디부아르 슬로베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탄자니아 영국 토고 오스트리아 🛨 유럽연합 立 이스라엘 미주 ₹ 키프로스 ▲ 니카라과 ★ C· 터키 ■ॐ■ 에콰도르 투르크메니스탄 🖈 **●** 우루과이 ★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동남아시아

미얀마

서태평양

(대한민국

8골 ★

중국

業 피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 파나마

동지중해

리비아 시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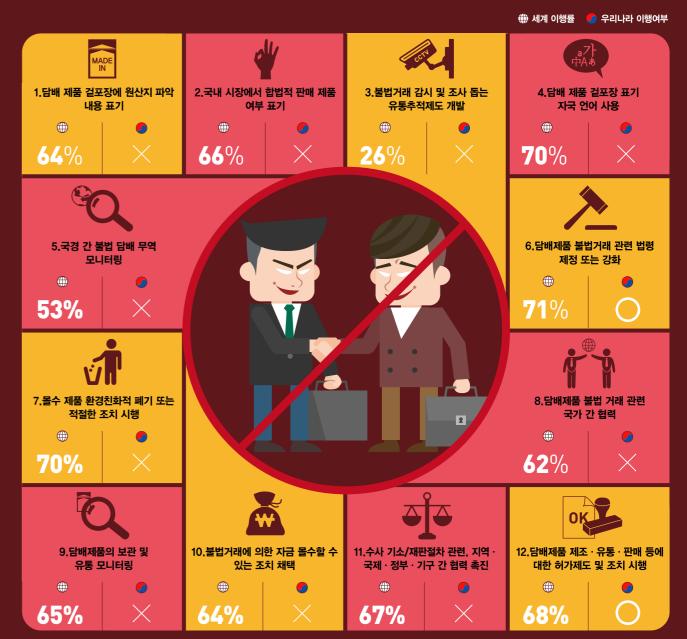
■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 튀니지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FCTC 제15조 이행현황 (2014, FCTC 당사국 대상)



지역별 서명국·비준국 분포 현황





이 달의 정책





프랑스, 2016년에 무광고포장법 도입 결정

프랑스 의회가 담배제품 무광고포장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결정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모든 궐련담배의 포장에 동일한 모양, 크기, 색상 및 서체가 적용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담배제품의 로고를 부착할 수 없다. 단, 제품명은 담뱃갑에 표기가 가능하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인 마리솔 투랜느(Marisol Touraine)는 "담뱃갑 포장이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호기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흡연이 매년 프랑스에서 73,000여 명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나미비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시작

2015년 4월 1일부터 나미비아의 모든 담배제품의 포장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포함하는 법이 적용되었다. 그림과 문구로 이루어진 건강경고는 담뱃갑 주요면적의 최소 60%를 차지해야 한다.

그동안 담뱃갑 경고그림에 관한 이행은 담배업계의 압력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왔다. 전(前) 보건부 장관인 리차드 캄위(Richard Kamwi) 박사에 따르면, 담배업계는 나미비아 정부에게 경고그림이 국제무역조약에 위배되며 도입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등 위협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담배업계의 위협과 압박을 이겨내고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네 번째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부르키나파소,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결정

지난 4월 7일, 부르키나파소의 보건부 장관과 통상부 장관이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령에 공동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올해 10월부터 부르키나파소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담배사용의 폐해를 보여주는 그림이 문구와 함께 부착될 예정이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ㆍ뒷면 각각의 60%를 차지하게 된다. 새로운 법령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2013년 10월에 협약 사무국과 부르키나파소 정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정책평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캄보디아, 새로운 담배규제법 통과

지난 4월 8일, 캄보디아 최초의 담배규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법은 모든 정당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으며, 4월 30일에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을 비준하였다. 이전에도 시행령 등을 통하여 일부 광고활동과 사무공간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왔으나, 이번에 통과된 담배규제법은 담배 수입 및 판매 제한, 미성년자와임산부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광고제한 및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 등 보다 폭넓고다양한 조치를 통한 담배사용 규제를 목표하고 있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로 하여금담배제품의 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일부지역에서 담배경작이 중요한 경제활동인 만큼, 새로운 법에서는 담배경작농가에 대한재정지원을 통하여 담배를 대체하는 작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FCTC 사무국에따르면 캄보디아 남성의 매일 흡연율은 39.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매년 10,000여 명의캄보디아국민이 담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담배광고 규제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 단행

올해로 제정 건년을 맞은 광고법의 개정안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에서 가결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법의 내용은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담배제품의 광고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매스미디어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제품 광고가 금지되며, 미성년자를 공략하는 모든 형태의 광고 또한 금지된다. 또한, 담배 외의 제품 또는 서비스 광고에 담배제품의 브랜드, 상표, 담뱃갑, 디자인 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를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광고금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 판매점에서의 광고 또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의연구



흡연자의 가향캡슐 담배제품 브랜드의 사용 및 브랜드 인식에 대한 연구

Thrasher J F., et al. (2015). Cigarette brands with flavour capsules in the filter: trends in use and brand perceptions among smokers in the USA, Mexico and Australia, 2012-2014. *Tobacco Control*. doi:10.1136/tobaccocontrol-2014-052064

본 연구는 궐련담배의 필터에 가향 캡슐을 장착한 디자인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인식과 캡슐 담배의 사용에 대한 연관성, 경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진은 미국과 멕시코, 호주에 사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흡연자 온라인 패널로부터 얻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기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격(프리미엄, 할인)과 가향여부(일반, 캡슐 없는 가향, 캡슐 가향)에 따라 선호하는 브랜드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참가자들은 타 브랜드나 브랜드 내 다른 제품(varieties) 보다 더 선호하는 브랜드의 매력도(만족도, 유행), 맛(부드러움, 강도),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모델을 활용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향, 가향캡슐 사용의 연관성, 그리고 선호하는 브랜드의 특성(가격, 가향여부) 및 인식(상대적인 매력도, 맛,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다. 연구 결과, 가향 캡슐 담배에 대한 선호도는 멕시코와 호주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층에서 캡슐담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브랜드를 선호하는 흡연자와 비교해보았을 때. 캡슐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들의 경우, 동일 브랜드 내에 캡슐담배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다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맛도 더 좋다고 생각했다. 멕시코와 미국의 경우, 다른 브랜드 제품과 비교했을 때 캡슐담배가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캡슐담배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 제품은 흡연자들에게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상(misleading)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및 흡연 재시작에 대한 호르몬 반응에서의 성별 차이

al'Absi, M., Nakajima, M., Allen, S., Lemieux, A., & Hatsukami, D. (2015). Sex Differences in Hormonal Responses to Stress and Smoking Relapse: A Prospective Examination, *Nicotine and Tobacco Research*, 17(4): 382-389, doi: 10.1093/ntr/ntu340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의 조절장애는 흡연의 재발(smoking relapse)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그간 이루어진 바가 없다. 금연의사가 있는

니코틴 의존 남성 52명과 여성 46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도록 한 이후 48시간 동안 금연하도록 하는 2번의 실험 스트레스 세션을 진행하였다. 실험 세션은 기준치, 스트레스, 회복기간을 포함하였다. 코티졸과 부신피질자극 호르몬을 측정하기위해 매 기간이 끝날 때마다 혈액 및 타액 샘플을 모았다.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에 대한 자가 보고(self—report) 역시 함께 수집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 참가 이후 4주간 상담을 위한 사후 세션에 참여했으며, 이 기간에도 생물학적 샘플 및 흡연 상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자가보고 측정을 실시하였다. 재흡연(relapse)은 금연 후 연속 7일간 담배를 피운 것으로 정의하였다. 4주 간의 사후 세션 기간 동안 60명의 참가자가 다시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세션 동안의 데이터를 콕스 회귀 모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코티졸수준이 재흡연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티졸 수준이 낮은 경우는 남성의 재흡연을 예측한 반면, 코티졸 수준이 높은 경우 여성의 재흡연을 예측할 수 있었다. 강해진 흡연 욕구는 남성의 이른 재흡연(early relapse)을 예측했으나 여성의 재흡연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및 흡연욕구에 대한 호르몬 반응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는 이른 재흡연에 대한 이해와 그 위험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과 증가한 프로게스테론 수준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Saladin, M., McClure, E., Baker, N., Carpenter, M., wanathan Ramakrishnan, V., Hartwell, K., & Gray, K. (2015). Increasing Progesterone Levels Are Associated With Smoking Abstinence Among Free-Cycling Women Smokers Who Receive Brief Pharmacotherapy. *Nicotine and Tobacco Research*, 17(4): 398-406. doi: 10.1093/ntr/ntu262

임상 전(preclinical) 연구 및 인간 실험 연구는 프로게스테론이 약물 보상(drug reward), 흡연욕구. 흡연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점. 그리고 에스트라디올이 약물 보상 및 흡연행동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제안한다. 월경주기단계와 금연 간의 관계를 밝혀낸 몇몇 치료 연구들은 프로게스테론이 특별히 높은 시기인 황체기 단계가 더 나은 금연결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 수준의 변화에 약물을 통한 금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저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진은 4주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한 니코틴 의존 여성 흡연자의 혈장 프로게스테론 및 에스트라디올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총 108명의 참가자는 무작위로 '바레니클린 정제 및 위약(placebo) 패치', 혹은 '위약 정제 및 니코틴 패치' 둘 중에 하나를 지급받았다. 혈장 샘플은 금연시도 1주 전에, 그리고 약물복용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확인하였다. 금연(Abstinence)은 주 단위로 평가하였다. 주별 호르몬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관찰된 프로게스테론 및 에스트라디올 수준은 월경주기 패턴과 동일했다. 중요한 것은, 프로게스테론의 증가는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바레니클린 치료에 비해 니코틴 패치 치료에서 더 잘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약물 기반 치료에 참여한 여성 흡연자의 프로게스테론 수준의 증가와 금연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첫 연구로서, 향후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약물 및 치료 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달의이슈





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담배 10개비 중 1개비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거래되는 이른바 "불법 담배"이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밀수부터 조직적 규모의 위조까지 합법적인 경로를 벗어나 생산, 제조 및 유통 ·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제제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로 선정된 만큼 각국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대하여 알아보자.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의 필요성

담배제품 불법거래의 원인과 종류

담배제품 불법거래는 "법으로 금지된 생산, 수송, 수령, 소지, 유통, 판매 또는 구매 등과 관련된 모든 관행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활동을 조장하는 모든 관행 또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허가되지 않은 상품의 제조, 위조, 밀수 등의 기타 불법적 유통이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담배제품 불법거래의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개인적 조세회피	면세품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구매로, 구매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납세 회피의 문제 발생
밀매	소량 단위로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담배를 세금이 높은 지역에서 판매
대규모 또는 조직적 밀수	대량으로 탁송된 담배제품의 불법 수송, 유통, 판매로 모든 조세를 회피
위조담배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위조 담배를 생산, 보통 조직적 밀수와 연계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가 발생하는 데에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먼저, 담뱃세와 가격의 차이가 불법거래의 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밀수하거나, 전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밀매 등이 이루어진다. 비공식적이거나 불법적인 유통망을 통한 거래 역시 불법거래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판매경로를 통한 모든 판매방식이 포함되며 길거리 판매, 미등록 공급처, 우편 및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한 판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국가체제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납세필증 부재와 같이 조세행정체계가 약하거나 철저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관료부패를 포함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

불법거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해당 제품이 유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배규제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담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구매할 수 있는 지불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이나 젊은이 등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쉽게 담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국에는 담배규제정책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제대로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정부 재정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법적 경로로 유통된 만큼 다국적 범죄행위와 연계될 수 있고, 나아가 범죄조직의 자금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현재 전 세계 궐련 담배 시장의 약 9~11% 가량이 불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불법적인 유통이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가 근절된다고 가정한다면, 전 세계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한 해 세수는 최소 300억 달러(한화로 약 32조 5천억원)일 것으로 보인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국내외 노력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채택 및 주요내용

각국의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를 마련하고 집행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이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는 FCTC 최초의 의정서이자, 그 자체로도 새로운 국제조약으로서, 협약 제15조인 '담배제품 불법거래'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는 부속서이다. 2007년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정부간 협상체(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이하 INB)가 설립되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5차례의 INB 회의를 거쳐 의정서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채택하면서 의정서가 탄생하게 되었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총 10개 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의무. 공급망 규제. 위법행위. 국제협력 등을 주요조치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담배제품 공급망 규제(Supply Chain Control)"는 의정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담배제품의 허가 및 승인, 담배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추적,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기록 및 보관,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조치, 인터넷을 통한 판매, 자유무역지대에서의 국제운송 및 면세 판매 등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허가(제6조) 및 상당의 주의(제7조)에서는 각 당사국이 반드시 담배제품 및 이를 제조하는 장비의 생산과 수출입에 대한 허가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 및 경작까지도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감시 체계 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작동되게끔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추적(제8조)**은 의정서가 정식 국제조약으로 발효한 지 5년 이내에 국제적 수준의 추적 및 감시 체계를 운영,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WHO FCTC 사무국 내에 국제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당사국들은 국가적 차원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추적 체계를 설립해 자국 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사국은 효과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코드나 도장 등 독특하고 안전한 고정식별 표시(non-removable identification markings)를 궐련의 경우 협약 발효 5년 이내. 그 외 모든 담배제품에는 10년 이내에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담배제품의 원산지, 판매지, 유통 및 배송 등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담배 제품 및 제조장비 등 공급망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보관(제9조). 담배제품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지급 방법 등의 보안 및 예방조치(제10조). 인터넷이나 전자통신, 그 외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에 의한 담배제품의 판매 금지(제11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담배 제품 제조 및 거래에 관한 효과적 규제의 실시(제12조), 모든 면세 판매에 해당 의정서를 적용할 것(제13조) 등이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공급망 규제 부분 외에도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의 공유 및 범죄 발생 시에 대한 국제 공조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의정서 당시국 간 회의 및 운영, 기타 관련 절차 등을 담고 있다.

2013년 1월 10일부터 1년간의 서명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54개국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서명기간을 거친 의정서는 협약과 마찬가지로 비준, 수락, 승인, 공식 확인

※싱가포르 납세 인증 담배(SDPC)



또는 가입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정서 제45조에 따라 40개국이 비준을 하면 정식 국제조약으로 발효하게 된다. 2015년 4월 현재까지 의정서 비준국은 오스트리아, 가봉, 몽골, 니카라과, 스페인, 투르크메니스탄, 우루과이 등 총 7개국으로 향후 최소 33개 국가가 비준을 해야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가 정식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각국의 노력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발효와는 별개로, FCTC 당사국은 이미 담배 불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2014년 세계이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에 따르면, 92개 국가가 담배제품의 불법거래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강화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15년 발표한 담배 불법거래 4대 전략으로는 국가간 정보 및 정책 교류를 통하여 불법거래 근절의 국제사회 환경 조성, 생산에서 소매업에 이르는 모든 공급망에서의 담배 불법거래 유인요소 차단, 영국 내 불법거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불법 담배에 대한 처벌 강화가 제시되어 있다.

담배제품의 합법성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주요한 조치에는 담뱃갑에 제품 원산지와 판매지역을 표기하는 것이 있는데, 2014년 기준 86개국에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중 49개 국가에서는 담뱃갑 포장에 "○○에서만 판매 허용(Sales only allowed in···)"과 같이 합법적 판매시장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납세담배(Singapore Duty—Paid Cigarette, SDPC)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콜롬비아와 캐나다 역시 담뱃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담배제품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담배제품의 생산·제조부터 최종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34개 국가에서 자국 내 담배거래유통망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2014년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담배규제법(EU Tobacco Products Directive)의 경우 EU 전역을 아우르는 담배제품 추적관리 시스템의 도입이추진될 예정이다. 이 추적관리 시스템에는 홀로그램과 같이 제품의 합법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선적으로 궐련담배와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경 간 거래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첫판매시점 전에 판매자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와 제품 판매 국가에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하여 담배제품의 수·출입망 또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NoTobacco BEWARE! ILLEGAL TOBACCO

※2015년 세계 금연의 날 포스터

2015년 세계 금연의 날 주요 메시지 및 캠페인 내용

WHO는 담배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고 전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로 지정하고, 담배규제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캠페인을 시행한다. 2013년 담배광고 · 판촉 및 후원 금지, 2014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 WHO가 선정한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Stop 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이다. 올해의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의 주요 목적은 전 세계 담배거래의 10%에 해당하는 불법담배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고하고,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보건적 · 경제적 · 사회 안보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데 있다. 또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와 적용을 통한 국가 · 지역 · 세계적 규모의 담배제품 공급망의 효과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불법담배의 낮은 가격이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담배사용을 조장하여 보건상의 폐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담뱃세 인상이나 경고그림 부착과 같은 금연정책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배 불법거래 근절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담배 불법거래가 마약 · 인신매매 · 무기거래 및 테러리즘과 같은 조직적 범죄활동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과 이러한 담배 불법거래의 뒤에는 담배업계의 가담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 · 안보적으로도 담배 불법거래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 불법거래 현황

사실,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는 우리나라에서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밀수 등의 불법거래 적발 건수나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불법거래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오고 있다. 불법거래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적 밀수보다는 개인의 조세회피가 주요 요인이었으며 최근에는 점차 대규모 단위의 밀수입 규모가 증가하여 전체 담배 밀수입 규모가 점층적으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담배 밀수입 단속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11월	
TE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선원승무원	22	11	9	3	7	2	5	1	4	4
여행자보따리	30	66	37	249	13	7	54	64	52	25
화물가장	16	11,251	21	2,179	7	3,266	8	43,623	3	66,723
기 타	5	1	9	1,660	1	1	6	3	4	4
계	73	11,329	76	4,091	28	3,276	73	43,691	63	66,756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2014.12.8)

최근 3년간 주요 검거 사례 ※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2014.12.8)

■ 국산 면세담배 수출가장 밀수입

'10.12월부터 '13.2월까지 42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 받은 외항선용, 선내판매용 국산 면세담배 2,933만갑(시가 664억원)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는 식품류만을 적입하여 밀수출('14년)

■ 외국산 선용품 수출가장 밀수입

'11.9월부터 '12.5월까지 15회에 걸쳐 수출신고 수리받은 이태리산 예스모크 면세담배 등 150만갑(시가 33억원)을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리고,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는 막걸리, 간장 등을 적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13년)

■동남아산 저급담배 밀수입

인도네시이산 담배 57,300보루(시가 12억원)를 반입한 후 케냐로 반송하기 위하여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식료품을 적입하여 사전에 준비한 똑같은 컨테이너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밀수입('13년)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국내 담배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해외 담배제품이나 위조담배의 밀수 등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규제정책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담배 거래망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담배제품의 수·출입을 관할하는 관세청에서는 담배밀수를 단속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산 면세담배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입담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면세담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거래의 경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담배제품 불법거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FCTC 제15조의 주요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2014년 세계이행보고서 내용 중 담배제품 불법거래와 관련된 세부조항의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13개의 세부항목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항은 담배제조 및 판매에 대한 허가제도와 불법거래 적발의 경우 처벌조치의 두 가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정책추진수준이 세계적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이행하고 있으며 담배제품 거래망 관리의 기본적인 조치인 담배생산지 및 판매지표기, 세금납부여부 확인을 위한 납세필증 부착 및 유통망 추적시스템 구축 등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FCTC 제15조 주요 조항

구분	세계 이행률(%)	우리나라 이행여부
1. 모든 담배제품의 겉포장에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표기	64	X
2. 국내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이를 모든 포장에 표기	66	X
3. 소매 및 유통제품의 최종 판매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겉포장에 표기	38	Χ
4. 담배불법거래 감시 및 조사를 도울 수 있는 담배유통 추적제도를 개발	26	X
5. 담배제품 겉포장에 삽입되는 모든 표기는 지국언어를 사용	70	X
6. 국경 간 담배무역에서 불법무역 관련 모니터링	53	X
7.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관련 국가 간 협력	62	X
8. 위조 담배와 밀수 담배를 포함하는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처벌과 구제조치를 위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강화	71	0
9. 몰수된 모든 제조 장비, 위조 · 밀수 담배 및 기타 담배제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폐기하거나, 국내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	70	Х
10. 담배제품의 보관 및 유통 모니터링	65	X
11.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로 인한 불법자금을 몰수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	64	X
12.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수사·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국내기관과 관련 지역·국제 정부 간 기구 간의 협력을 촉진	67	X
13.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담배제품의 제조·유통·판매 등에 대한 허가제도 및 조치를 시행	68	0

담배제품 불법거래 규제와 의정서의 발효가 시급한 이유

담배제품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전 세계 국가가 명심해야 할 점은 불법담배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다. 담배 불법거래는 한 국가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 간의 가격 및 세금 차이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다국적 제조·생산 구조를 갖고 있는 담배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적 차원의 협력이 아닌 전 세계적 규모의 협력체계를 통해서만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할 수 있다. 또한, 담배규제정책을 저해하기 위하여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담배업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가 간의 협력과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2012년에 채택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가 국가적 차원의 조세체계 및 담배제품 거래망 관리의 강화뿐만 아니라 담배 불법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의 수사 및 기소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담배 불법거래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 나아가 전 세계와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Monthly Index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지표의 최신내용을
전달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규제
지표의 의의와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달의지표



성인의 간접흡연 노출 현황

Exposure to tobacco smoke in the adult population

지표의 개요 및 의의

성인의 간접흡연 노출 현황 비율은 국가 내 간접흡연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성인 대상 관련 지표에 해당하는 예측치를 산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심장 질환과 폐암과 같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용어 정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연기의 노출로부터 보호를 위한 제8조의 이행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8 on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에서는 "간접흡연"을 흡연자가 내뱉는 연기(주류연)와 연소되는 담배(또는 기타담배제품)의 끝에서 나는 연기(부류연)로 정의하고 있다.

지표 정의: 생활공간에 따라 세분화

가정 내 성인의 간접흡연 노출률 :

조사 날짜까지 규정된 기간 동안 최소 한 번 정도 집에서 타인의 담배연기에 노출된 응답자로 정의하며, 총 성인인구 비율로 명시된 가정에서의 담배연기에 노출된 비율은 성인인구 100명 당 가정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된 성인 수를 나타낸다.

직장 내 성인의 간접흡연 노출률:

조사 날짜까지 규정된 기간 동안 최소 한번 정도 직장에서 타인의 담배연기에 노출된 응답자로 정의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조 시행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르면, "직장"은 대체로 "고용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로 정의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상이 지불되는 유형이 있을 경우, 이는 보상을 위해 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발적 업무도 포함되어야한다. 또한, "일터"는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뿐만 아니라 고용 기간 동안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하는데 복도,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로비, 카페, 화장실, 라운지, 식당, 공동시설뿐만 아니라 차고 및 막사와 같은 외부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외 최신동향

세계 성인 간접흡연 노출현황

전 세계 성인인구의 간접흡연 노출 현황을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WHO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 조사하는 세계성인흡연실태조사(Global Adults Tobacco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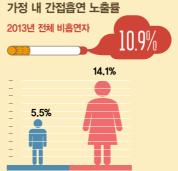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 현황



실내직장 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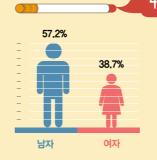
우리나라



여자

우리나라 직장 내 간접흡연 위험

남자



체계를 통하여 여러 국가의 성인의 간접흡연 노출 현황을 비교·분석해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매일, 일주일간 또는 월간 가정 내 실내공간에서의 흡연이 일어난다고 보고한 성인의 분율을 조사한 것으로 국가별로 타인의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가장 최신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주요 국가 성인의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2011년에 중국이 67.3%(남성 70.5%, 여성 63.9%), 태국은 36.0%(남성 39.9%, 여성 32.3%)이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는 멕시코(2009년)로 17.3%(남성 17.2%, 17.4%)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성인 중 최근 30일 이내에 실내직장 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율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중국이 63.3%(남성 71.1%, 여성 53.2%), 태국은 30.5%(남성 37.1%, 여성 22.8%)의 비율로 직장 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간접흡연 비율 역시 멕시코가 18.6%(남성 22.2%, 여성 13.7%)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우루과이역시 16.5%(남성 21.4%, 여성 11.8%)로 비교적 직장 내 성인의 간접흡연 위험이 덜한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성인의 간접흡연 노출률

우리나라 성인의 간접흡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간접흡연 현황은 비흡연자의 담배연기 노출을 조사하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역시 간접흡연 현황은 생활공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직장 내 간접흡연과 가정 내 간접흡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3년 전체 비흡연자의 10.9%이며 남자가 5.5%이고 여자가 14.1%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정 내 간접흡연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율 (%)							
전체	전체	19세이상(표준화)	18.5	14.7	15.5	14.9	14.9	12.5	11.9	10.9
남자	전체	19세이상(표준화)	7.1	4.4	6.5	6.9	5.8	4.9	4.8	5.5
여자	전체	19세이상(표준화)	24.1	20.5	20.5	19.4	19.8	16.7	16	14.1

※ 현재 비흡연자의 가정 내 간접흡연노출률 :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가정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분율

한편 직장 내 간접흡연 위험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에는 47.3%가 간접흡연 노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성별간 자료를 봐도 남성의 경우 절반이 넘는 57.2%가, 여성의 경우에는 38.7%가 직장 내에서 간접흡연의 경험이 있다고 나타나 사무공간 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분율 (%)							
	전체	전체	19세이상(표준화)	36.8	45.9	45.4	45.7	49.2	45.2	46	47.3
	남자	전체	19세이상(표준화)	44.5	55.1	53.4	53.2	58.6	55.2	54.4	57.2
	여자	전체	19세이상(표준화)	31.8	36.4	38.2	39.4	41.8	37.2	38.8	38.7

- ※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내 간접흡연노출률: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직장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분율
- ※ '13년: '최근 7일 동안' 준거기간 포함
-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한국건강증진재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10주년 기념자료집, 2014.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 Answers: New rules for tobacco products, February 2014.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134_en.htm WHO, 2014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14.

WHO, Standard presentation on the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2013.

WHO, WHO FCTC Indicator Compendium(1st edition), 2013.

WHO, World No Tobacco Day 2015: Stop illcit trade of tobacco products, 2015, http://www.who.int/campaigns/no-tobacco-day/2015/event/en/
Singapore Customs, SDPC Cigarette Marking Regulation. http://www.customs.gov.sg/topNav/new/SDPC+Cigarette+Marking+Regulation.html

UK Government, Tackling illicit tobacco: from leaf to light, 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ckling-illicit-tobacco-from-leaf-to-light

^{※ &#}x27;13년 : '최근 7일 동안' 준거기간 포함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매월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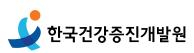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5월호 예고

2015년 5월호 금연이슈리포트에서는 담배의존치료 및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흡연자의 담배의존치료 지원을 통한 국가흡연율 감소를 도모하는 각국의 노력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